

(주)아성다이소  
세종허브센터 물류시스템 구축공사  
계약서

2023. 12. 1

“발주자(甲)” (주)아성다이소

“시공자(乙)” (주)에스에프에이

# 계약서

1. 계약명 : 세종허브센터 물류시스템 구축공사
2. 납품장소: (주)아성다이소 세종허브센터  
(세종시 소정면 고등리 349 번지 일원)
3. 공사기간: 2023.12.01. ~ 2027.01.31 (38 개월).
4. 공사금액: ₩ 50,000,000,000 (一金 오백억원整) 「VAT 별도」
5. 대금지불조건
  - 5.1 선급(계약)금: 공사금액의 10%, 계약이행 보증보험 제출 후 30 일 이내 지급
  - 5.2 중도금: 공사금액의 80%, 단, 공정율(공사진척도) 따라 4 회, 종합 시운전 검사 완료 후 1 회, 총 5 회
  - 5.3 잔 금: 공사금액의 10%, 단, 최종 설비 성능 검사 합격 및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후 30 일 이내 지급
6. 선급금 이행보증 : 선급금의 100% (보증보험증권 제출)
7. 계약이행 보증금 : 공사금액의 10% (보증보험증권 제출).
8. 하자보수 보증금 : 공사금액의 10% (보증보험증권 제출).  
※ 단, 선급금 이행보증, 계약이행 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의 ~~선정~~ 기준금액인 선급금 또는 공사금액의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9. 하자보증기간 : 공사 준공일로부터 2 년
10. 지체상금율: 1 일당 공사금액의 일천분의 일 (1/1,000)/日, 최대한도는 공사금액의 20% 이내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첨부된 약정서, 계약내역서 (견적서) 및 기본설계서가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확약하며, 계약서 2 부를 작성·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1일

## 발주자(甲)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8(도곡동)

(주)아성다이소 [110111-0832736]

대표이사 김기호 (서명 또는 인)

## 시공자(乙)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9길 25(영천동)

(주)에스에프에이 [194211-0032714]

대표이사 김영민 (서명 또는 인)



# 약정서

## 제 1 조 「총 칙」

(주)아성다이소(이하 "갑"이라 칭함)과 (주)에스에프에이  
(이하 "을"이라 칭함)는 세종허브센터 물류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 2.1 "계약물품"이란 "을"이 "갑"에게 제작·공급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 2.2 "납품"이란 설비사양서에 기술된 계약물품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공 및 종합 시운전검사까지를 의미한다.
- 2.3 "준공"이란 모든 계약물품의 납품 및 설치 시공이 완료되어 종합 성능검사를 완료한 상태를 의미한다.

## 제 3 조 「계약 문서」

- 3.1 계약문서는 계약서, 약정서, 계약내역서(견적서), 기본설계서로 구성된다. 또한 이 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로서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이를 수락한 경우 그 통지문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3.2 기본설계서 및 설계 도면상의 불분명, 누락, 오류 또는 모순사항이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시정 보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제 4 조 「사업수행계획서, 제작사양서 및 도면의 제출」

- 4.1 "갑"과 "을"간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시공하게 될 본 공사를 착수함에 있어 "을"은 계약일로부터 30 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4.2 사업수행계획서는 현장직원조직도, 직원투입계획, 자재투입계획,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공사예정공정표(CPM)로 구성한다. 단, "갑"이 이에 대한 보완을 별도로 요청할 경우 "을"은 "갑"이 요청한 기간 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3 "갑"은 "을"이 제출한 제작사양서 및 도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갑"이 14 일 이내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보완 및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을"에게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4.4 "갑"과 "을"간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도면 및 제작사양서에 의하여 "을"이  
시공할 본 공사는 "을"이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

#### 제 5 조 「공사 재료」

- 5.1 계약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제작도면 및 구입 사양서에 정한 것과  
일치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서 국산인 경우 KS 규격, 외산인 경우 JIS 또는 DIN 규격에  
각 합격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이 보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5.2 5.1 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사재료"는 자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이를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을"이 부적합한  
"공사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아니할 경우에  
"갑"은 일방적으로 해당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5.3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 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 제 6 조 「납품이행 감독 및 중간검사」

- 6.1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언제든지 "을"의 계약물품의 제작과정과  
계약이행상태를 검사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의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6.2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감독 및 중간검사를 "갑"이  
지정하는 전문 검정회사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경비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 6.3 "을"은 제작 중간검사 계획을 작성하여 "갑"과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갑"에게 중간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 6.4 "갑"이 중간검사를 실시한 후 "을"은 중간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조서의 일부분으로 보관한다.

#### 제 7 조 「기술지도」

- 7.1 "을"은 계약물품을 "갑"의 공사현장에 반입한 때부터 시운전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관리자(현장소장) 1인 이상을 파견하여 설치 및 시운전 검사에

대한기술지도를 하여야 하고, 기술지도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7.2 "을"은 종합 시운전 검사 기간 중 "갑"의 운전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운전지침서 및 유지보수 지침서를 작성, 제공한다.

#### 제 8 조 「납품 및 검수, 기성부분 검사」

8.1 "을"은 계약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제출한 공사진행 일정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고, 검사계획을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갑"에게 검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8.2 "갑"은 검수 의뢰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검수 일을 지정하여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을"은 "갑"의 참관 하에 검수일에 사전 합의한 검사계획 및 검수규정에 따라 외관검사 및 시운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3 "을"은 계약물품이 제 2 항의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물품을 다시 제작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종합 시운전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8.4 계약물품이 검사에 합격하여 "갑"이 계약물품을 인수한 경우에 "을"의 납품이 완료된다.

8.5 "을"은 계약물품의 납품검수를 받거나 최종납품을 하는 경우 다음 문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납품하는 물품의 성적서 또는 시운전검사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납품 및 검수의뢰서
- 2) 물품 반입증명서
- 3) 조립 및 설치기록
- 4) 최종 완성도면
- 5) 보존 및 사용에 관한 취급설명서
- 6) 기타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자료

#### 제 9 조 「종합 시운전 검사」

9.1 종합 시운전 검사는 "을"이 단계별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갑"이 검토, 승인하여, "을"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9.2 "을"은 계약물품의 설치완료 후 "갑"이 요구하는 테스트 개시일로부터 최종 종합 시운전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9.3 종합 시운전 검사는 모든 기기의 단위성능 및 전체 SYSTEM의 능력검사를 단위기간 동안 연속해서 실제 운영하여 기술사양서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 9.4 "을"은 검수 및 종합 시운전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도 추후 발견된 하자(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성능 및 품질미달을 모두 포함)에 대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
- 9.5. "을"은 종합시운전 검사 합격 완료 후 제 19 조에 의거하여, 기성부분검사를 시행한다.

#### 제 10 조 「설비 성능 검사」

- 10.1 "갑"은 종합시운전 검사 합격 및 준공 이후,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을 위한 주요 설비별 최종 성능 검사(Capa Test)를 시행하여 각 설비별 요구 처리 능력을 검사하고, 기술사양서의 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 10.2. "을"은 설비별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갑"은 "을"이 설비별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 일 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지체하는 때에는 설비별 테스트 계획서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10.3 설비 성능검사는 "을"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을"이 설비 성능검사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11 조 「설비 성능 검사 불합격시의 처리」

- 11.1 "을"은 설비 성능 검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 20 조에 의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11.2 "을"은 설비성능 검사 결과 불합격시에는 "갑"이 요구하는 상당한 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여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갑"에게 합격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제 12 조 「계약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금」

- 12.1 "을"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 수령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2.2 본 계약이 제 24.1 항 또는 제 24.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계약이행 보증금은 "갑"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귀속된다.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갑"은 "을"의 의무 위반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계약이행 보증금으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갑"은 계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 "을"에게 그 초과 손해의 배상을 별도로 구할 수 있다.

## 제 13 조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 보증금」

- 13.1 "을"은 계약물품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후 "갑"에게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3.2 "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최종 잔금 지급 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을"은 납품한 설비에 대하여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유상으로 보수한다.
- 13.3 "갑"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을"이 불응할 때는 "갑"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제3자에게 시공 또는 납품시킬 수 있으며 공사대금이 하자보증금을 초과할 시에는 "을"이 지불한다.
- 13.4 "을"은 "갑"이 하자보수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보수대책을 "갑"에게 제출하고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파견 및 대치품의 제공 등 최선의 방법으로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13.5 "갑"은 필요시 계약물품의 성능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단, "을"의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을"을 입회시키기로 함), "갑"의 요구시 "을"은 "갑"이 요구하는 소정 기일 내에 기술지도원을 파견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유지보수 계약」

- 14.1 하자보수 보증기간 이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유지보수계약에 의한다.
- 14.2 하자보수 보증기간 이후 "갑"의 책임으로 유지보수를 행할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관련부품을 유상으로 10년 이상 공급한다.

## 제 15 조 「표지」

- 15.1 "을"은 계약물품의 식별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개의 물품포장 외부 또는 몸체(포장하지 않은 물품)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여야 한다.
- 1) 고유번호 또는 부호
  - 2)"갑"이 정하는 설비식별부호
  - 3) 품명 및 단위
  - 4) 용적 및 중량
  - 5) 취급상 주의표지
  - 6) 제작자 및 공급자명
  - 7) 발주자명

8) 포장 및 검사일자

9) 계약번호

15.2 전항의 표지는 포장명세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5.3 포장도 할 수 없고 몸체 표시도 할 수 없는 계약물품인 경우에는 전항의 내용이 명기된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 제 16 조 「보존 조치」

"을"은 계약물품에 따라 수송, 저장 중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합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습 및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 17 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17.1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7.2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8 조 「대금지불」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공사대금의 지불조건은 다음과 같다.

18.1 선급(계약)금: 공사금액의 10%, 계약이행 보증보험 ~~제출~~ 후 30 일 이내 지급

18.2 중도금: 공사금액의 80%, 단, 공정율(공사진척도) 따라 4 회, 종합 시운전  
검사 완료 후 1 회, 총 5 회

18.3 잔 금: 공사금액의 10%, 단, 최종 설비 성능 검사 합격 및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후 30 일 이내 지급

#### 제 19 조 「기성부분 검사 및 기성부분금」

19.1 "을"은 착공 후 "갑"과 합의한 공정표의 진척율에 따라 4 회와 종합 시운전  
검사 완료 후 1 회 총 5 회에 걸쳐서 기성부분 검사를 시행한다. 익월  
5 일까지 "갑"에게 서면 통지하고 기성부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9.2 "갑"은 "을"로부터 통지 받은 때로부터 7 일 이내에 "을"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갑"은 19.1 항 검사결과 "을"의 계약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  
되거나 불완전한 이행으로 발견한 때에는 "을"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고 "을"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9.4 "을"은 계약내역서, 시공계획서, 공사예정 공정표에 의거 공사가 완료된 부분 (본 계약 19.1 항에 따른 기성부분 검사 승인부분)에 한하여 기성부분금 청구를 "갑"에게 하며, "갑"은 청구 부분에 대한 검토 후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부분금을 지급한다. 단, 기성부분금이 선급금에 달할때까지는 "갑"에 의해 승인된 기성부분금의 지급은 기 지급된 선급금으로 자동으로 갈음된다.

19.5 "을"은 위 19.4항에 따른 기성부분금 청구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모두 갖춰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자체 없이 "을"의 청구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갑"이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동 청구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공사의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설계도서 및 공사완료 부분 물량 산출근거서 및 기성청구서, 기성내역서 등 기성금 청구 금액 관련 자료
2. 전회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및 당시까지의 자재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하도급업체 또는 자재납품업체 작성의 기성부분금 또는 납품대금 수령확인서

19.6 "을"은 "갑"의 청구 승인일로부터 7일이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19.7 위 제 19.4 항 ~~까지~~ 제 19.6 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기성부분금을 무이자로 지급보류하거나 "을"의 확인을 거쳐 "을"의 하도급업체, "을" 또는 "을"의 하도급업체의 임직원 기타 제3자에게 기성부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지급 한 범위 내에서 "을"에 대한 "갑"의 기성부분금 채무는 소멸한다.

1. "을"의 하도급업체 또는 자재납품업체, "을"의 임직원 또는 "을"의 하도급업체의 임직원으로부터 그 대금 또는 임금의 직접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단, 해당 직접 지급 요청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할 법률 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을"의 하도급업체, "을" 또는 "을"의 하도급업체의 임직원, 기타 제3자에 의해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점유 또는 유치권행사가 있는 경우

19.8 위 제 19.3 항에 의한 시정조치로 인한 공기 자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 제 20 조 「자체상금」

20.1 "을"은 제 11 조에 의거하여, 설비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며 지체 1일에 대하여 공사금액(증액된 경우에는 최종

증액된 공사금액)의 1.0/1,000 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의 최대한도는 공사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20.2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에는 "을"의 지체상금 지급의무는 면제한다.

#### 제 21 조 「공사기간의 변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갑"과 "을"의 상호 합의하에 공사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21.1 "을"의 제출자료에 대한 "갑"의 승인지연으로 전체공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 21.2 "갑"의 관련 공정의 작업지연으로 인하여 "을"의 공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
- 21.3 기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작업이 지연된 경우.

#### 제 22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보장」

- 22.1 "을"은 계약이행 중 "갑"으로부터 습득한 모든 정보 및 비밀사항을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22.2 "을"은 종업원, 퇴직자 및 하도급업자 등으로 하여금 본 조의 비밀보장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22.3 본 조의 약정은 본 계약이 만료, 해제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 22.4 "갑"이 제공한 모든 자료는 "갑"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본 계약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 23 조 「설계 변경 및 추가공사」

- 23.1. 건축 설계 과정에서 물류시스템 및 설비 변경에 따른 계약 대비 수량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계약 대비 금액 차이분은 "갑"과 "을" 간의 사전 서면 협의를 통해서 최종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
- 23.2. "갑"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을"은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갑"에게 제출하며 공사금액 사전 서면 합의를 거쳐 "갑"의 공사 실행 승인을 받은 후 추가 공사를 실시한다.

#### 제 24 조 「계약해지」

- 24.1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을"에 대하여 폐업, 회생, 파산, 워크아웃 신청,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을"의 영업 또는 면허, 자격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있는 경우
  5. "을"에 대한 중요재산(본 건 계약금액은 중요재산으로 간주한다.)에 대한 체납처분, 강제집행, 보전처분이 있거나 부도 처리되어 계약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제 20.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에 도달한 경우
  7. "을"의 귀책사유로 작업중 중대한 인사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8. "을"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30 일 이상 지연되거나, "을"의 임직원 또는 자재납품업체나 그 임직원 등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농성을 하는 경우로서 계약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9. "을"이 제 17 조를 위반하여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이전하거나 하도급한 경우
  10.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의 임직원 또는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등에게 ~~임금~~ 또는 대금(기성부분금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1. "을"이 제 22 조에서 정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2. 기타 "을"이 본 건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 24.2 제 24.1 항 제 1 호의 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 할 수 있고, 그 외의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즉시 할 수 있다.
- 24.3 제 24.1 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 24.4 제 24.1 항에 의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갑"이 다른 업체(이하 '후속업체'라 함)와 잔여 공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까지의 잔여 공정율의 비율로 계산한 잔여계약금액과 후속업체와의 도급계약금액의 차액을 "갑"의 손해에 포함한다. 단, 후속업체와의

도급계약금액이 통상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손해는 제외한다.

24.5 "을"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철거, 반출하지 아니할 공사용 시설·장비를 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위 공사용 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갑"이 "을"에게 제공 또는 대여한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을"에게 기성이 지급된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에게 공사의 "하수급인", 협력업체, 자재납품업체 등의 목록(주소 및 연락처 포함)과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및 미지급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24.6 제 24.1 항의 규정에 따라 "갑"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지한 날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24.7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에게 파산선고가 있거나, 회생 개시결정이 있거나, 워크아웃 신청이 있는 경우
2.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8 조에서 정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24.8 제 24.7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24.5 항 및 제 24.6 항 규정을 준용한다.

24.9 제 24.7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을"이 "갑"에게 14 일의 기간을 정하여 잔여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14 일의 기간을 정하여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을"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갑"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4.10 제 24.7 항에 의하여 "을"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25 조 「현장 대리인」

- 25.1 "을"은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 소지자 또는 "갑"이 요구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며, 미리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5.2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한다.
- 25.3 "갑"은 25.1 항에 의하여 임명된 현장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보수교육이수 및 품질시험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갑"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의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 및 공종별 담당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때
- 25.4 "을"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대리인 및 공종별 담당자를 교체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25.5 현장대리인이 본 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 제 26 조 「안전관리 등 제규정 준수」

- 26.1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험증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 "갑"에게 제출한다.
- 26.2 "을"은 관련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및 산업재해와 "을" 및 "을"의 하도급 등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26.3 "을"은 안전관리, 재해예방 및 보안에 대하여 공사 종사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4 "을"은 "갑"이 제정하여 시행중인 사규 중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반규정(보안규정, 공사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27 조 「현장관리」

27.1 "을"은 공사현장 주변을 항상 정리하여 시공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7.2 "을"이 작업장 정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잔여품을 수집, 보관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갑"은 "을"의 비용 부담으로 제3자에게 정리작업을 시킬 수 있다.

27.3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갑"에게 끼친 손해 (인명, 건물, 기기피해 등)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27.4 "을"은 본 계약의 종료 시까지 공사작업장 및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산업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갑"의 교육, 감독, 지시이행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 28 조 「보험 및 면책과 책임」

28.1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직원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보험을 각자의 비용으로 부담 하여야 한다.

28.2 "을"은 본 공사로 발생하는 민원, 민/형사상이나 행정상의 제반 문제와 사고,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과 제3자에 대하여 모두 책임진다.

28.3 "을"은 그의 임직원이나 하수급인, 그 하수급인의 임직원의 행위(불법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 인한 민원, 민/형사상이나 행정상의 제반 문제와 사고, 위험부담에 대하여도 "을"의 귀책사유나, 선임 감독상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이들 임직원등과 연대하여 모두 책임진다.

#### 제 29 조 「법령의 준수」

29.1 "갑"과 "을"은 본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안전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29.2 "을"이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본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 건설안전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30 조 「계약 해석」

본 계약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 31 조 「소송 관할」

- 31.1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법의 판결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 31.2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 상호 협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31.3 본 계약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갑"과 "을"은 상호간에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 32 조 「특약」

- 32.1 "을"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32.2 "을"은 제 24.7 항 각호의 사유로 제 24.9 항에 따른 계약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않는 한 여하한 경우에도 공사를 중지 및 중단할 수 없다.
- 32.3. "을"은 제 32.2 항에도 불구하고 "을"의 기성부분의 이행여부나 기성부분금액의 적부 또는 범위에 대해 "갑"과 사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성부분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의 중지 또는 중단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의견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부분금액의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쟁송의~~ 결과 "을"의 기성부분 또는 기성부분금액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을"은 "갑"이 담보제공한 금액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갑"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32.4 "을"이 위 제 32.2 항 또는 제 32.3 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갑"이 입은 손해일체(특별손해 포함)를 배상하여야 한다.
- 32.5. 본 건은 "갑"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나 설비변경 또는 자재변경을 제외하고는 물가 및 환율 변경 등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인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제 33 조 「건축 관련 특기사항」

- 33.1 "을"은 건축시공사에서 설치하는 가설 전기 분전함 3 개(자동창고, 박스소터, ODS-OSR 부위) 외 추가로 필요한 위치에는 직접 설치해야한다.
- 33.2. 전기요금은 기본료 포함하여 자동창고 설치시는 건축시공사에서 90%, "을"에서 10%를 지불하며, 자동창고 외 물류설비 설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갑"사와 건축시공사와의 사전 서면 협의를 통해서 건축시공사에서 70%, "을"에서 15%를 부담한다.

- 33.3. 외벽 장비 반입구는 1 개 열만 설치, 슈퍼 데크 등의 시설은 직접 "을"에서 설치하며, 시공 전 사전 협의되지 않는 장비 반입 오프닝 관련한 비용은 "을"에서 직접 부담한다. 또한 장비반입구에는 관련 법규에 맞는 개폐가 가능한 안전 난간대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33.4. 자동창고를 포함하여 모든 설비의 설치용 장비 사용에 대한 구조 검토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전에 구조 검토서 승인을 득한경우에만 건축 구조물 위에 설치, 사용한다.
- 33.5. 자동창고 설치 관련하여 자동창고에 하부층이 있으므로 건축공정과 간섭 생기지 않도록 대형 양중 장비 사용 등 설치 계획을 세워서 "갑"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33.6. 자동창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 관련하여 템플레이트, 앵글, 앙카 등 보양 및 보양 제거 및 청소를 실시한다. 또한 자동창고 기초로 진입하는 장비 이동로 설치 및 제거는 "을"이 부담한다.
- 33.7. 자동창고 설치 완료 후에는 청소 완료상태에 대해 "갑"의 승인을 받는다.
- 33.8. 건축시공사의 초평탄 바닥 미장 완료 후에는 "을"은 자재 야적장, 장비 반입구, 주요 동선 등에 대해서 할판 보양을 실시하며, 사용완료 후 수거 및 폐기 처리한다. 또한 렌탈, 지게차 등 우레탄 바퀴 사용해야하며, 미사용으로 인한 스키드 마크 등의 오염 생길시 제거해야한다.
- 33.9. "을"은 건축물 준공 전까지 화장실, 샤워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은 건축 시공사와 별도 설치하여 사용한다.
- 33.10. "을"의 물류시스템 설치 완료 후 물류시스템에 대한 준공 청소를 시행한다.
- 33.11. 물류시스템 1 차 판넬 관련하여 "을"이 정위치 시키면, 결선은 건축시공사에서 실시한다. 2 차판넬은 "을"에서 결선 및 설치한다.
- 33.12. 자재, 시설 등의 소유 및 관리를 건축시공사로 이관하는 경우 필히 문서로 작성해야하며, 문서가 없는 경우, 원 발생자에게 최종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 33.13. 현장 내 가설건축물 설치시에는 필히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에 설치, 사용해야한다.
- 33.14. 물류설비와 관련한 모든 조작판넬 및 분전함은 지게차, 롤테이너 등의 충격으로부터 방호 될 수 있는 구조물 설치해야한다.
- 33.15. 자동창고, 셔틀랙 등 대형 물류설비 설치시 건축시공사의 본 조명 이용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을"이 설치, 사용해야한다.

## 제 34 조 「물류설비 관련 특기사항」

- 34.1. 모든 설비는 자율안전필증 외 노동부 주관 안정성 검사 관련 사항에 충족되도록 설계해야한다.
- 34.2. 모든 설비는 원활한 점검 및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하며, 방화셔터와 설비간섭구간은 법적 규정 충족하고, 설비가 정상 작동되고, 작업자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 설치해야한다.
- 34.3. Conveyor 는 아래 항의 항목에 맞춰서 설계, 설치해야한다.
  1. Box Conveyor 는 롤러 간격 피치 최대 60mm, 베어링 규격 최소 UC205 이상 사용한다.
  2. 폐지 Conveyor 를 포함한 Box Conveyor 사이 연결부 이물받이를 설치한다.
  3. Box Conveyor 의 상층, 하층 이동을 위한 경사각은 14 도 미만으로 설계, 설치한다.
  4. Pallet Conveyor 는 분진 최소화 구조로 설계, 설치해야한다.
  5. Spiral Conveyor 는 자립형으로 설계, 설치해야한다.
- 34.4. "을"은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교통부에서 인증하는 "스마트 인증 물류센터"의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위한 서류작성 및 "갑"의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한다.

